

# 서울특별시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영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  
발 의 자 : 이영실, 이정인, 오현정,  
김춘례, 이병도, 봉양순,  
권순선, 김용연, 강동길,  
이호대, 김경우, 경만선,  
이광호, 김화숙, 이승미,  
김호평, 노식래, 홍성룡,  
황인구, 박순규, 박상구,  
송명화, 문병훈, 박기재,  
이은주, 김혜련, 서운기,  
김동식, 김소양 의원(29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환경보전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음.
- 이에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의2 신설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##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)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(이하 “비상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
2.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·교육
3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
4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·장비등의 동원방법
5. 화학사고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·복구 계획
6.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7조의2(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)</u></p> <p><u>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(이하 “비상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</u></li> <li><u>2.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·교육</u></li> <li><u>3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</u></li> <li><u>4.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·장비등의 동원방법</u></li> <li><u>5. 화학사고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·복구 계획</u></li> <li><u>6.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li> </ol> <p><u>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</u></p>

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 
수정할 수 있다.